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9938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 재판경과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9938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0나43662 판결

## 전문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곤

피고, 피상고인 B 운영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산

담당변호사 박광열

판결 선고 2024. 3. 28.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0나43662 판결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N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부당이득반환 청구만을 하고 있다고 보고,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료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적법한 권한 없이 이 사건 지하상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지하상가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실, 원고는 원심에서 2023. 7. 10. 자 준비서면, 2023. 7. 1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지하상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지하상가의 임차인들로부터 이 사건 임대료를 징수한 뒤 원고를 제외한 다른 공유지분권자들에게만 배당금을 배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서면을 원심 제9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사실, 원고는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청구를 변경한다고만 하였을 뿐 종전의 청구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취하하는지 여부를 명백히 표시하지는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서는 마땅히 원고에 대하여 종전의 청구인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변경된 청구인 배당금 청구의 관계가 교환적 변경인지 추가적 변경인지 여부, 추가적 변경인 경우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에 관하여 밝히도록 촉구하는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분명히 한 후 그에 따른 판단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종전의 청구인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하였을 뿐 변경된 청구인 배당금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신숙희